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해 양 수 산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선박검사 시 구조적 취약구역에 대한 검사를 전담할 선박검사관 등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8-52호, 2018.5.24.]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1부
2.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개정전문) 1부. 끝.

해양수산부장관

수신자 어선정책팀장, 해사안전정책과장, 해사안전관리과장, 항로표지과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조사관),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사)한국선급회장, 뷰로베리타스 한국대표, (사)한국선주협회장, (사)한국해운조합이사장, (특)선박관리업협회장

주무관	해양수산사무관	과장	전결 2018. 5. 25.
협조자			
시행 해사산업기술과-1992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558호 / http://www.mof.go.kr

전화번호 044-200-5815 팩스번호 044-200-5848 / h2kin@korea.kr / 대국민 공개